

6. 國土利用管理法施行規則中改正令

건설교통부령 제122호 1997. 10. 15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도시지역안에서 개발계획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범위를 토지이용계획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10퍼센트이내에서 20퍼센트이내로 확대하여 공장증설을 용이하게 하며,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로공사 및 하천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 공사 및 하천공사로 한정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에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및 하천공사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4 제1호중 “상주인구 2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호이상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를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촉진지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 영 제7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등을 제외한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3)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6) 지방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이내(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킬로미터이내를 말한다)인 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 (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 (10)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

구역

(12)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비추어 보아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지

나. 산림법시행령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업공단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 지정·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2조의 14 제1항중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받거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 1천원
(관할 시·군 또는 구가 아닌 경우에
는 2천원)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 100원
(관할 시·군 또는 구가 아닌 경우에

는 200원)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의 2(항만구역 등 지정통보)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 정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 사실의 통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항만구역등 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에 따른 국토 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의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한다)
2.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를 말한다)

제4조의 2 제2호 및 제3호중 “100분의 10이내”를 각각 “100분의 10이내(공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중 “기존 도로구역안”을 “도로구

역안”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기존 하천구역안”을 “하천구역안”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한다.

2. 도로구역안 또는 접도구역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기존 도로구역”을 “도로구역안”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기존 하천구역안을 “하천구역안”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한다.

4. 도로구역안 또는 접도구역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제7조의 3제1항제2호 본문중 “농업”을 “농업(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농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7조의 4를 제7조의 5로 하고, 제7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조의 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및 경기도의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이전 또는 사업상 협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제주도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

(2) 제주도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2.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

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
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14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4 조의 4(개발행위신고서) 영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되, 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의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⑩
자금조달방법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 서
식 작성방법란중 “⑩란은 예금인출액·부
동산매각대금·금융기관차입금 등 매수자
의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 2 서식]

(앞쪽)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시·군·구	읍·면	리·동		
1	국토이용	용도지역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			
2	도시계획	용도지역	(전용·일반·준) 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		
		용도지구	풍치·미관(1, 2, 3, 4, 5종)·아파트· 고도(M이상, 이하 또는 층이상, 이하), 기타()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속·접합)·공원·기타()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일단의(주택지·공업용지)조성·재개발·시 가지조성		
		구역	개발제한구역(안·저축)·상세계획구역(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 과)·기타()		
		기타	도시계획입안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3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기지구역			해당없음
4	농지	농업(진흥·보호)구역			해당없음
5	산림	보전임지(생산·공익)			해당없음
6	자연공원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해당없음
7	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해당없음
8	문화재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해당없음
9	토지거래	허가구역·신고구역			해당없음
기타					
귀하의 신청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수수료 1천원 (관할 시·군 또는 구가 아닌 경우에는 2천원)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뒤쪽)

※ 참고사항

1. 이 확인원은 1필지에 대한 앞쪽의 1 내지 9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사항의 확인입니다.
2. 이 확인원은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이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은 원칙적으로 생략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확인도면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4. 군사시설란중 군용항공기지구역에 대하여는 확인원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지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확인도면〉

주택회보